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5321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A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7. 10. 26.

판결 선고2017. 11. 30.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 포함) 제작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송출사업, 방송시스템구축, 컨설팅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와 E의 신용보증약정

■ 원고는 2008. 11. 17. E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2009. 11. 16.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이후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5. 2. 27.로 변경하였으며, E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는 E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09. 11. 16.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원고는 E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5. 3. 24.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15. 4. 27. 우리은행에 172,107,208원(= 원금 170,000,000원 + 2,107,2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생한 대지급금은 1,108,117원, 미수채권은 486,240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B과 피고는 2014. 8. 6.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E을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8. 접수 제17345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B의 재산상태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합계는 약 3,337,756,960원, 소극재산 합계는 약 3,541,847,500원이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2015. 5. 6. 기준 감정평가액)	3,260,000,000	1	만수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 원금 기준)	1,689,000,000
---	----------------------------------	---------------	---	------------------------------	---------------

1	이 사건 각 부동산(2015. 5. 6. 기준 감정평가액)	3,260,000,000	1	만수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 원금 기준)	1,689,000,000
2	나주시 F 임야 15,051m ²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기준)	17,760,180	2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	500,000,000
3	나주시 G 대 519m ²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기준)	3,690,090	3	우리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	141,000,000
4	나주시 H 외 7필지 6,559m ²	42,606,690	4	피고에 대한 채무(2014. 7.경 기준)	1,211,847,500
5	강원도 평창군 I H동 3층 2568호	13,700,000			
합계	3,337,756,960	합계	3,541,847,500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B의 적극재산 합계는 4,235,823,300원이고, 소극재산 합계는 5,199,323,953원이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2016. 11. 8.기준 감정평가액)	4,100,000,000	1	만수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57,570,355
2	나주시 F 임야 15,051m ²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기준)	36,122,400	2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피담보채무	456,293,614
3	나주시 G 대 519m ²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기준)	5,709,000	3	기술신용보증기금	592,263,769
4	나주시 H 외 7필지 6,559m ²	80,291,900	4	피고	1,476,947,500
5	강원도 평창군 I H동 3층 2568호	13,700,000	5	원고(신용보증기금)	43,706,386
			6	서울신용보증재단	328,474,564
합계	4,235,823,300	7	부산은행	44,067,765	
		합계	5,199,323,953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및 배당 경과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만수새마을금고(나중에 J이 양수)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D(중복)]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7. 1. 4.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3,729,99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3. 21.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715,989,87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	구리새마을금고	1,606,841,280	1,606,841,280	근저당권부질권자
2	만수새마을금고의 양수인 J	650,729,075(채권최고액 603,158,720)	603,158,720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3	우리은행	456,293,614	456,293,614	근저당권자
4	원고	43,706,386	43,706,386	근저당권자
5	서울신용보증재단	171,000,000	171,000,000	근저당권자
6	서울신용보증재단	157,474,564	157,474,564	근저당권자
7	피고	1,476,947,500	677,515,306	근저당권자

■ 원고는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71호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만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173,701,565원(= 대위변제금 172,107,208원 + 대지급금 1,108,117원 + 미수채권 48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이후 E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약 7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실제로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B에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리은행에 2015. 4. 27. 대위변제한 금액은 172,107,208원인 사실, 이러한 대위변제 이후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4. 접수 제3581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의 일부인 채권최고액 93,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11. 접수 제131332호)를 마친 사실,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43,706,386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부분은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E의 적극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B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B이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E이 피고로부터 계속 방송송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 및 을다 제1, 12, 13, 14, 15, 22,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2008. 1. 1. 피고와 방송송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까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② E은 서비스요금을 연체하여 2013. 9.경에는 체납요금이 10억 원에 이르게 되고 피고가 체납요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E과 그 대표이사 B은 2013. 9. 및 2013. 10.경 액면금 합계 693,5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각각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2014. 7. 24. 위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액 693,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E이 그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5.까지 체납금 중 5억 원을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체납금 711,847,500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한 점, ④ 이에 E과 피고, B은 2014. 8. 6.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방송송출 서비스 체납요금 지급채무를 B이 연대보증하고, 위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 및 근저당설정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4. 8.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E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인 1,211,847,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200,000,000원이어서 기존

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외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송송출 서비스요금 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13.경 피고는 E를 상대로 2014. 10. 31.까지 체납된 방송송출 서비스요금 1,299,84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0830호 사건)을 신청하였고, E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비싼 사용료를 부담케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안 사건으로 이송되었으나, E의 자백간주로 피고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2072 판결)이 선고된 점, ⑦ 피고는 E의 제3채무자 7곳을 상대로 2014. 11. 25.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266호 사건) 결정을 받는 등 계속하여 E의 제3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484호 사건), ⑧ E이 피고와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실제로 E이 어떠한 장래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업계속을 위한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에 대한 기존 방송송출 서비스요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4. 8. 6.에 체결되었고 원고의 대위변제는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15. 4. 27.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커 피고로서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 역시 방송송출 서비스요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다음 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이사 K은 E의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의 경영 상태, 자금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방법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D(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3,729,99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3. 21. 배당할 금액 3,730,371,096원 중 피고에게 677,515,30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3. 8.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71호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B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평근

판사신동호

판사장유진

별지